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와 헌법적 논쟁*

진 호 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변호사

■ 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에 관한 미국의 입법 동향 및 관련 헌법적 분쟁을 살펴보고 우리 헌법 해석상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규제 입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판단도 활성화되어 있어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가치가 상당하다. 핵심은 강제적 본인확인제를 전제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만일 연령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성인에게도 청소년과 동등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개인정보 보호, 중독성 기술 제한, 제공콘텐츠 제한 등)를 강제하는 것인데, 후자는 규제 강도에 따라 사실상 청소년의 이용 가능한 미디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인터넷 규제에 관한 종전 논쟁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기도 하는데, 하급심에서는 대체로 종래 미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수용하여 관련 규제 내용이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을 이유로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 입법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본권을 폭넓게 제한하는데, 대표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할 수 없는 학대받는 아

* 이 논문은 필자가 작성한 연구보고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미국에서의 최근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사회변화와 헌법 2024-G-2, 헌법재판연구원, 2024)를 토대로 수정,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논문은 필자 개인의 연구이며, 소속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nesss@snu.ac.kr

동이나 성소수자와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해 미처 예상치 못한 기본권 제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규제는 국가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대신하여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자유의 매개체로서 소셜미디어 업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기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령 확인이 강제될 경우에는 연령 확인을 원치 않거나 쉽게 할 수 없는 성인 이용자의 익명의 자유까지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청소년과 소셜미디어를 특징하는 규제 입법은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고, 청소년 유해성의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관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과잉한 규제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무분별하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규제 입법을 계수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를 논의한다면 헌법적 한계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 청소년 기본권, 소셜미디어, 플랫폼, 미국법

목 차

- I. 서론
- II. 미국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의 도입 배경 및 개별 입법 내용
 - 1. 제정 배경
 - 2. 개별 입법 내용
- III. 미국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에 관한 위헌성 심사와 관련 논의
 - 1. 종래 연방대법원의 입장 이해
 - 2.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에 관한 위헌소송과 법원의 판단
 - 3.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 비판
- IV. 우리 헌법 해석상의 시사점
 - 1.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비교
 - 2. 한국에서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 문제
- V. 결론

I. 서론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청소년이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과 같은 소셜미디어(social media)¹⁾에 과하게 의존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청소년을 ‘유해한’ 소셜미디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쟁이 뜨겁다. 여기서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은 ① 불안, 우울, 섭식장애, 자해 등 정신장애 발생, ② 중독과 과의존, ③ 온라인 괴롭힘(사이버불링)이나 성적 착취, 학대 노출, ④ 유해한 콘텐츠 접촉, ⑤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앞선 논쟁은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영향을 주었고, 2024년 22대 국회에서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이나, 교대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안이 제안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10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소셜미디어 플랫폼(social media platform) 또는 사회관계(연결)망서비스라고도 한다.

대 청소년 98% 이상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이들 중 60% 이상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이를 사용하며, 최근 한 달간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69.9%(특히 여학생의 경우 85.1%,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80.6%), 유튜브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이 97.7%(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약 90% 이상)에 이른다.²⁾ 과거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제도를 시행했던 것처럼,³⁾ 우리도 청소년을 소셜미디어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규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과 주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입법이 논의되었고 심지어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시도는 대개 위헌성 문제로 인하여 법원에 의해 좌절되었다. 일련의 판결은 하급심에서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으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및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미 연방대법원의 해석론을 따른 것이다. 이 점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에 관한 헌법적 논쟁의 검토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인터넷 규제 입법(강제적 연령확인제 포함)을 갖고 있고 청소년에 관한 후견적 입법에 관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는 물론 헌법해석론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관련 선행 연구는 대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일반론이나,⁴⁾ 청소년의 게임물 이용 제한이나 청소년의 기본권제한 일반에 관한 연구이다.⁵⁾

2) 배상률, 이창호, 김남두,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I: 10대 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64, 77, 105면.

3) 그러나 동 제도(이른바 강제적 섷다운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취지의 결정(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 판례집 26-1하, 176)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헌성 논란 끝에 국회 입법으로 폐지되었다.

4) 예컨대 이동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에서 액세스권의 헌법적 의의, 유럽헌법연구 제13권, 2013, 263-292면; 김현귀,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시론적 연구, 법과 정책 제26권 제1호, 2020, 27-59면.

5) 예컨대 김지혜, 미성숙 전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 - 헌법재판소 선거연령 사

본 논문에서는 미국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와 헌법적 논쟁을 중심으로 헌법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규제가 도입된 배경과 개별 입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미 연방대법원의 일반적 태도와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의 위헌성이 문제 된 하급심 판결을 분석하며,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우리 헌법의 해석상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Ⅱ. 미국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의 도입 배경 및 개별 입법 내용

1. 제정 배경

가. 미국에서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호 논의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왔는데, 헌법은 물론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에 의해 도입된 통신법 제230절 (Telecommunication Act of 1934, 47 U.S.C. § 230)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상호작용적인” 인터넷에서 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제3의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으로, 사업자를 발행자나 발화자로 취급하지 않고 외설물 등 불법 콘텐츠 제거 의무로부터 면책하는 효과가 있었다. 동 조항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을 줄여주어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

건과 섯다운제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3권 제1호, 2014, 111-130면; 박종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111-145면; 황성기,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병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1권 제3호, 2014, 27-49면 등.

공해준 필수적인 법 조항으로 이해되어 왔다.⁶⁾

미 연방대법원도 2017년경까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현대의 공적 광장”이라고 부르고⁷⁾ 표현 매체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여,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를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⁸⁾ 그러나 근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청소년 위해 외에도 프라이버시 침해, 정치적 편향, 가짜뉴스, 혐오표현, 극단적인 성향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포⁹⁾ 등 수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종래 자율규제 중심의 규율이 타당한지 법적 논쟁이 촉발되었다. 즉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중립성’, ‘공공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에게 더 큰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통신법 제230절의 적용 범위¹⁰⁾와 해당 법률조항의 개정 내지 폐지 여부¹¹⁾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¹²⁾ 청소

6) 예컨대 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적 정보의 게시를 알고 있어도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이 무제한인 것은 아니며 연방형법, 지적재산권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athleen Ann Ruane, How Broad A Shield? A Brief Overview of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LSB1008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egal Sidebar, 2018, 2-3.

7) Lester Gerard Packingham, *Petitioner v. North Carolina*, 582 US _ (2017).

8) Peter J. Benson, *NetChoice v. Bonta and First Amendment Limits on Protecting Children Online* (LSB1107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egal Sidebar, 2023, 1.

9) 소셜미디어가 테러리즘 콘텐츠를 게시, 확산시킴으로써 테러를 조장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Twitter, Inc., et al., v. Mehier Taamneh, et al*, 598 U.S. 471; *Reynaldo Gonzalez, et al., v. Google LLC*, 598 U.S. 617 참조.

10) 2018년 입법된, 연방이나 주의 성매매 관련 법률의 집행을 위 CDA 제230절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하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콘텐츠 게시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FOSTA-SESTA를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이었다 (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of 2017, Public Law 115-164; 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 of 2017).

11) The Stopping Big Tech’s Censorship Act (S. 4062), the Limiting Section 230 Immunity to Good Samaritans Act (S. 3983), the Protect Speech Act (H.R. 8517), the bipartisan Platform Accountability and Consumer Transparency Act 등 수많은 새로운 법률안이 제시된 바 있다. Nicholas Bradley, “Something for Nothing: Untangling a Knot of Section 230 Solutions”, *Cardozo Law Review* d e·novo 87, 2022, 68-73.

12) Joe Cosgrove Jr., *Section 230: Twenty-Six Words that Created Controversy*, *Infrastructure* 61(2), 2022, 5-9.

년 규제 역시 위와 같은 규제의 흐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나. 소셜미디어 논쟁의 전개

미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2021년이다.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페이스북(현 사명 ‘메타’)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용 인스타그램(“인스타그램 키즈”) 출시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공론화하면서, 정치권과 규제 여론이 이 사실을 강하게 문제삼았다.¹³⁾

페이스북 내부 문건에 따르면 자살 생각을 보고한 10대 중 영국의 경우 13%, 미국의 경우 6%가 인스타그램을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10대 여성 32%가 자신의 신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 더 기분이 나빠졌다고 한다. 인스타그램이 모든 10대에게 유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용자에게 게시물을 선별 제공하는 등 일부 핵심 기능이 청소년에게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연방 의회에서는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를 소환하여 청문회를 열었고, 결국 페이스북 측은 인스타그램 키즈 개발을 중단하였다.¹⁴⁾ 이후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한편,¹⁵⁾ 연방

13) “Facebook Knows Instagram Is Toxic for Teen Girls, Company Documents Show”, The Wall Street Journal, 2021. 9. 14. 수정, 2024. 3. 1. 접속, https://www.wsj.com/articles/facebook-knows-instagram-is-toxic-for-teen-girls-company-documents-show-11631620739?reflink=desktopwebshare_permalink; “Facebook documents show how toxic Instagram is for teens, Wall Street Journal reports”, CNBC, 2021. 9. 14. 수정, 2024. 3. 1. 접속, <https://www.cnbc.com/2021/09/14/facebook-documents-show-how-toxic-instagram-is-for-teens-wsj.html>.

14) “페이스북, 술한 비판에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 일시 중단”, 조선일보, 2021. 9. 28. 수정, 2024. 3. 1. 접속,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9/28/B5BULZFYRJBNXL3VTEOUYMZJRU/.

15) “States sue Meta claiming its social platforms are addictive and harm children’s mental health”, APNews, 2023. 9. 25. 수정, 2024. 4. 1. 접속, <https://apnews.com/article/metachildrenteensharmslawsuit17858802d76143d358e38ee15150dc94>.

과 주에서 각종 청소년 보호 입법이 시도되었다.

다. 자율규제 시도

위 청문회 이후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미국, 유럽의 규제 법안을 의식하여 나름대로 청소년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메타는 인스타그램에서 청소년 계정에 자동으로 최고 수준의 콘텐츠 보호 설정을 적용하고, 16세 미만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며, 자해 등 검색 시 전문가 상담을 소개하거나, 낯선 이용자와의 연결 시 알람을 넣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¹⁶⁾ 2024년 9월부터는 청소년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하여 다른 이용자가 계정의 게시물을 보거나 메시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야간 알람 금지, 부모의 보호 강화(대화 상대방 확인, 많이 본 콘텐츠 확인)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16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도 요구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방법(예컨대 사진 제출)에 따른 연령 추정 분석도 추진하였다.¹⁷⁾

유튜브 역시 청소년의 계정 설정 시 성인인 가족 계정과 연결하고, 부모가 구독 계정, 시청 기록, 코멘트 등을 확인하며, 청소년이 동영상 업로드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면 알람이 전송되도록 하는 등 부모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틱톡은 친구를 초대하면 보상을 주는 프

16) “메타, 청소년 유해콘텐츠 차단 강화”, 조선비즈, 2024. 1. 10. 수정, 2024. 4. 1. 접속,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4/01/10/WY6YCXZF55HLZBBH3V2YBL4RZQ>.

17) Instagram’s New ‘Teen Accounts’: What Parents and Kids Need to Know, The New York Times, 2024. 9. 17. 수정, 2024. 9. 25. 접속, <https://www.nytimes.com/2024/09/17/technology/instagram-teen-account-settings-safety.html>. 나아가 메타는 틱톡, 스냅챗과 공동으로 자살이나 자해 콘텐츠가 소셜미디어플랫폼에 만연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Meta teams up with Snap and TikTok to address self-harm content, NBC NEWS, 2024. 9. 13. 수정, 2024. 9. 25. 접속, <https://www.nbcnews.com/tech/social-media/meta-teams-snap-tiktok-address-self-harm-content-rcna170838>.

로그인을 중단하고, 연령별로 기본 설정에 제한을 두며, 부모의 자녀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스냅챗도 부모가 청소년의 대화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출시하고, X도 민감한 게시물의 업로드와 리트윗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려 한다.¹⁸⁾

그러나 소셜미디어 업체가 시장경쟁 속에서 청소년의 이용 자체를 적극 억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의견이 여전히 적지 않다.

2. 개별 입법 내용

가. 연방의회에 대응

(1) 현재 시행 중인 법률 - 연방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1998년 입법된 연방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은 현재도 유효하다.¹⁹⁾ 동법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주요 대상은 아니어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요소를 포함하거나 청소년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는(actual acknowledge) 서비스 관리자로 하여금 청소년에 관한 정보 수집 전에 부모 등의 검증 가능한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온라인 액세스를 부모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였다. 그밖에 COPPA는 주로 13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 정보의 기밀성, 보안성 보장, 부모의 접근권한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 대상을 13세 이상으로 함을 밝히고 서비

¹⁸⁾ 요즘 애들은 “없으면 안 된다”는데...‘청소년 금지령’ 내리는 SNS, 매일경제, 2024. 9. 21. 수정, 2024. 9. 25. 접속, <https://www.mk.co.kr/news/society/11121191>.

¹⁹⁾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15 U.S.C. § § 6501-6506.

스 가입 시 자발적으로 연령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COPPA가 입법된 지 25년 이상 경과하였고, 이용자 스스로 연령을 입력하도록 하는 조치가 청소년 보호에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오래 제기되어 왔다.²⁰⁾ 그러나 각종 후속입법은 매년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 최근 상원통과 입법안 - 연방 아동온라인안전및프라이버시법(KOSPA)

지난 2024년 7월 초당적 협력하에 연방상원은 KOSA²¹⁾와 COPPA 2.0의 두 법안을 주로 결합한 아동온라인안전및프라이버시법(Kids Online Safety and Privacy Act: KOSPA)²²⁾을 통과시켰다. 다만 2024년 대통령 선거 등의 일정으로 올해 안에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유사한 취지를 가진 캘리포니아주법(후술 예정)의 문제를 고려할 때 위헌성 우려도 제기된 점은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²³⁾ 이하 입법안의 주요 내용만 정리한다.

20) 후술할 입법례 이전에도 연방의회에서는 온라인상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협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 예컨대 2006년 온라인범죄자배제법(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of 2006: DOPA, H. R. 5319)이 논의되면서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 도서관에서 청소년의 “상업적 소셜네트워크웹사이트”나 “채팅방”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부모 등 성년 보호자의 감독하에 교육 목적으로 제한 해제 기능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에의 접근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1) 온라인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SNS와 같이 청소년 이용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다만 이메일서비스, 교육기관 등 제외)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설계, 운영에서 정신적 장애, 중독, 성적 착취, 사이버괴롭힘 등 특정 피해를 방지,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의의무로 부과하는 한편, 각종 구체적인 조치도 강제하고자 하였다.

22) Kids Online Safety and Privacy Act, S.2073.

23) Senate passes landmark bills to protect kids online, raising pressure on House, The Washington Post, 2024. 7. 30. 수정, 2024. 8. 1. 접속,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4/07/30/seante-kosa-passes-kids-online-privacy>.

(가) 정의규정²⁴⁾

규제 대상 플랫폼은 청소년²⁵⁾이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온라인플랫폼, 온라인비디오게임,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이 아닌 경우로, ① 일반통신/광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메일/실시간 통신 전화/비디오 회의 서비스,²⁶⁾ 온라인플랫폼의 구성요소가 아니거나 이와 연결되지 않은 무선 메시징 서비스²⁷⁾ 업체, ② 비영리조직/교육기관/도서관 서비스, ③ 뉴스/스포츠 보도 서비스, ④ 기업 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파일 공유, 협업 서비스, ⑤ 인터넷 트래픽 라우팅(routing)²⁸⁾을 위한 가상 사설망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설계 기능(design feature)은 청소년이 해당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빈도, 시간, 활동을 증가시키는 모든 기능이나 요소, 예컨대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자동 재생, 플랫폼 사용 시간에 따른 보상, 알림, 맞춤형 추천 시스템, 인게임 구매, 외모를 변경하는 필터를 말한다. 개인맞춤형 추천 시스템(personalized recommendation system)은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 다른 이용자, 해시태그(hashtag)²⁹⁾ 또는 게시물을 제안, 홍보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완전 또는 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나 오로지 이용자의 언어, 도시 또는 연령만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 KOSPA § 101.

25) 17세 미만인 자(Minor). 아동(child)은 13세 미만의 자로 별도 정의하였다.

26) 온라인플랫폼이 아니고, 실시간 통신 접속이 고유한 링크나 식별자(identifier)를 사용하여야 함.

27) 주요 또는 유일한 기능이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되는 텍스트, 사진 또는 동영상의 전송으로 이루어지는 직접 메시징으로, 메시지가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전송되고 온라인플랫폼 내에 게시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28) 네트워크 경로 선택.

29) 특정 단어를 사용하면 그 단어에 대한 글을 모아 분류하는 기능.

(나) 대상 플랫폼의 일반적 의무³⁰⁾

대상 플랫폼은 설계 기능을 생성, 실행는 데 청소년에게 해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해악은 ① 불안, 우울, 섭식장애, 약물 오남용, 자살 행동 등 증거 기반 의학 정보를 반영한 정신건강 장애, ② 중독을 유도, 조장하는 이용 패턴, ③ 신체적 폭력, 온라인 괴롭힘, 따돌림, ④ 성적 착취, 학대, ⑤ 마약, 담배, 도박, 주류의 홍보, 마케팅, ⑥ 착취적, 불공정한, 사기적인 마케팅 관행 기타 재정적 해악 등을 말한다.

그러나 청소년이 의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콘텐츠의 검색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청소년 해악을 방지, 완화하는 자료와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는 위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청소년 보호도구³¹⁾

대상 플랫폼이 이용자 또는 방문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는 경우 청소년 보호도구를 갖추어야 한다.³²⁾ 청소년 도구로는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 외에도, 청소년이 접근, 이용하기 쉬운 것으로서, ① 다른 이용자나 방문자의 청소년과의 소통 제한 및 개인 데이터의 공개, 열람, 접촉 제한, ②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이용 시간에 따른 보상이나 알림 등 청소년의 강박적 이용을 유발하는 설계 기능의 제한, ③ 개인맞춤형 추천 시스템 제어 옵션의 제공(연대기식 콘텐츠 표시 허용, 추천콘텐츠 제한 등), ④ 청소년의 위치정보 공유 제한 및 위치추적 시 경고 제공 등이 요구되고, 이러한 보호도구에 관하여 청소년에게 가장 보호적인 프라이

30) KOSPA § 102.

31) KOSPA § 103.

32) 이 법안에서 청소년임을 안다(know or knows)는 것은 실제 알고 있거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아는 경우(fairly implied on the basis of objective circumstances)를 말한다.

버시 및 안전설정을 기본값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부모 도구로는 역시 부모의 접근, 이용이 쉬운 것으로서, 청소년 도구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프라이버시 및 계정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프라이버시 및 계정 설정의 열람, 그리고 변경, 통제하는 권한), 청소년의 구매 및 금융거래 제한 능력, 청소년의 대상 플랫폼 총 이용시간 열람 및 제한 능력 등이 부여되어야 하는 한편, 부모 도구가 활성화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가시성 있는 알림 제공, 대상 플랫폼이 이용자가 아동임을 알 때에는 부모 도구의 기본 활성화가 요구된다.³³⁾

한편, 대상 플랫폼은 청소년 해악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보고(report)할 수 있는 접근, 이용이 용이한 수단 및 관련 전자적 연락처를 갖추고 신속하게 답변, 처리하는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특히 연간 월평균 미국 내 활성 이용자 수(1,000명)에 따라 차등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기간 내에 관련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긴급한 위협이 포착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한편, 대상 플랫폼은 청소년 이용자에게 마약, 담배, 도박, 주류의 광고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보호도구의 적용원칙(rules of application)으로는 접근용이성(accessibility),³⁴⁾ 은폐된 패턴 금지(dark pattern prohibition),³⁵⁾ 시기에 관한 고려(timing considerations)³⁶⁾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보호도구 관련 사항은 대상 플랫폼의 합리적인 조치(불법, 외설 또는 유해 자료의 배포를 차단, 감지, 방지하는 조치 또는 스팸을 차단하거나,

33) 다만 법시행 전 대상 플랫폼이 이미 부모 도구 활성화 안내를 제공했으나 부모가 이를 거부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도구를 기본 활성화할 필요는 없다.

34) 플랫폼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의 연령, 능력, 발달 수요를 고려하여 명확하고 가시성 있는 방식으로 정보 및 제어 옵션을 제공하고, 이를 약화, 비활성화하는 것을 유도해서는 아니 됨.

35) 이용자 자율성, 의사결정을 저하, 방해하는 목적으로 인터페이스 설계, 수정, 조작 금지.

36) 보호도구가 온라인 비디오게임이 게임레벨을 진행하거나 경쟁을 마치는 등 정상적인 게임플레이의 중단을 요해서는 아니 됨. 또한 부모도구 변경 시점에 이용자 장치나 계정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인터넷 연결 시 변경 사항이 적용되어야 함.

필터링하고 범죄 활동을 방지하며, 서비스의 보안을 보호하는 조치) 방해, 청소년의 이용 내역, 검색기록, 메시지, 연락처 목록, 기타 통신 콘텐츠 또는 메타데이터 공개 요구, 청소년의 언어, 도시, 연령만을 이용한 개인맞춤형 추천 시스템의 이용방해, 온라인비디오게임이 경쟁 게임 플레이나 이용자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이름 기타 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방해와 같은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³⁷⁾

(라)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COPPA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의 개념을 확대하는 한편, 연결장치(connected device), 위치정보, 아동 청소년 대상 개인맞춤형 광고(individual-specific advertising to children or teens) 등의 개념도 새로이 정의한다.³⁸⁾ 보호 대상으로 13세 미만뿐만 아니라 13세 이상 17세 미만의 청소년도 추가하여 부모나 청소년의 검증 가능한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수집 정보를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별도로 통지 없이 미국 외 저장/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보다 더 오래 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보정정, 삭제 요구권을 명시하는(개인정보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면 서비스 중단을 해서는 아니 됨) 등 청소년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도 이용자가 아동, 청소년임을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아는 경우에 이러한 규율이 적용된다.

37) 그밖에 § 104 이하에서는 대상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도구 등 이용약관이나 정책에 관한 공개/고지의무, 청소년 해악 예방 및 완화에 관한 조치에 관한 공개 보고서 발행(독립적인 제3자와의 협력), 소셜미디어와 청소년에 관한 연구 및 시장조사 수행(플랫폼에 데이터 제공 요구 가능), 연령 확인 방법 연구,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보호지침 발행 및 집행, 아동 온라인 안전 협의회(Kids Online Safety Council)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율한다.

38) KOSPA § 120 이하.

(마) 온라인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 및 이용자 제어권 보장

알고리즘에 따른 콘텐츠 추천 시 투명성과 이용자의 제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불투명 알고리즘(opaque algorithm)”³⁹⁾을 사용하는 플랫폼을 규제한다. 플랫폼은 불투명 알고리즘을 사용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명확하고 가시성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고(알고리즘의 주요 기능, 입력값, 매개변수,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방법, 사용자 선택 옵션 등 설명 포함), 이용자가 불투명 알고리즘과 입력 투명 알고리즘(input-transparent algorithm: 불투명 알고리즘이 아닌 알고리즘으로,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제공한 데이터만을 사용함)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불투명 알고리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서비스나 제품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다른 가격을 청구하거나, 제공 조건을 다르게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FTC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⁴⁰⁾

나. 각 주의 입법적 대응

전국 주 입법부 협의회(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자료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4년 2월 기준 적어도 30개 이상의 주에서 보호조치를 도입하려 한다.⁴¹⁾ 다만 실제 제정된 입법례는 위와 같은 숫자에 미치지 못

39)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이용자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의 선택, 순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40) 그밖에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된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FTC의 역할도 보장하였다. FTC의 아동 대상 모바일 및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감독 및 집행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 제출, 미국 회계감사 원장(Comptroller General)의 청소년의 금융 기술 제품 사용 시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 제출 등도 규정되었다.

41) “Social Media and Children 2024 Legislation”,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4. 2. 6. 수정, 2024. 4. 1. 접속, <https://www.ncsl.org/technology-and-communication/social-media-and-children2024-legislation>.

하고,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는 한정적이거나) 이마저도 대개 아마존, 구글 등이 회원으로 있는 정보통신업계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 등의 위헌소송이나 반발로 시행되지 못했다.

(1) 공통적인 규제내용⁴²⁾

시간 순서상으로는 여러 주법이 먼저 입법되고 KOSPA 등 연방법안의 성립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나, 아직 입법되지 않은 연방법안이 주법보다는 종합적 조치를 잘 나열한 편이라 앞서 이를 소개하였다. 주법은 적게는 14세부터 많게는 18세까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접속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를 규율한다. 공통적으로 ‘개인 계정의 생성 및 공개’, ‘이용자 생성 콘텐츠의 공유’,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 설정, 대화 등 사회적 상호작용’ 등 개념 요소를 제시하고, 검색엔진, 클라우드 보관 서비스, 사이버보안 서비스,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메일이나 직접 메시징 서비스, 전자상거래 또는 온라인쇼핑(이커머스) 제품 후기, 확립되고 널리 알려진 언론매체(예컨대 뉴스) 또는 주로 일방형의 정보 제공형 서비스, 경력개발 또는 교육 도구(때로는 문서 열람, 공유 및 협업 서비스 포함) 등을

42) 플로리다주 청소년온라인보호법(Online Protection for Minors), Online Protections for Minors, 2024 FL H 3 참조; 오하이오주의 소셜미디어부모통지법(Social Media Parental Notification Act), Ohio Rev. Code § 1349.09; 아칸소주의 소셜미디어 안전법(Social Media Safety Act), Arkansas Act 689 of 2023; 유타소셜미디어규제법(Utah Social Media Regulation Act), Utah Code §§ 13-63-101 to 701(SB 152, HB 311); 캘리포니아주 연령적합설계법(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 CAADCA), Cal. Civ. Code § 1798.99.29; 뉴욕주 청소년데이터보호법(New Work Child Data Protection Act), S.7695B/A.8149A; 청소년 대상 중독성 피드 악용 방지법(SAFE For Kids Act), The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SAFE) for Kids Act, S.7694A/A.8148A; 미시시피주 워커몽고메리온라인아동보호법(Walker Montgomery Protecting Children Online Act), Mississippi H.B. 1126 등. 아이다호주(H.B. 498, 67th Leg., 2nd Sess. (Idaho 2024)), 루이지애나주(H.B. 142 (La. 2022)), 미시시피주(S.B. 2346 (Miss. 2023)), 몬태나주(S.B. 544 (Mont. 2023)), 텍사스주(H.B. 1181 (Tex. 2023)) 등을 참고하였다.

예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유사하다.

내용상으로는 강제적 연령 확인제(이 경우 청소년의 이용 자체를 강력히 금지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는 직접 연령 확인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각종 연령 추정 조치를 통해 별도 연령 확인이 되지 않는 한 ‘청소년 유해성’의 최소화를 강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에 따른 청소년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 이용금지/원칙적 청소년보호 강제/부모 도구 강제⁴³⁾/서비스 내 절차적 권리 보장⁴⁴⁾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원칙적 청소년보호 강제’는 구체적인 입법 목적에 따라 (i) 콘텐츠 자체의 유해성 나아가서는 타 인과의 접촉으로부터의 보호(예컨대 청소년 계정 대상 음란물이나 주류 광고 금지, 지인이 아닌 계정과의 의사소통 금지), (ii) 프라이버시 보호(프로파일링, 위치정보 수집 등 금지), (iii) 알고리즘 등의 이용에 따른 중독성 또는 과의존 보호(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푸시 알림 등 중독성 기술 금지, 시간제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전형적으로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유형(대표적으로 오하이오주, 아칸소주)과 청소년 이용은 허용하지만,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각종 제한을 가하는 유형(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최근 입법된 뉴욕주법도 이와 유사하다)을 살펴본다.

(2) (강제적 연령확인제 전제) 이용자체를 제한하는 유형 - 오하이오주, 아칸소주

2023년 제정, 2024년 1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오하이오주의 소셜미디어부모통지법(Social Media Parental Notification Act)⁴⁵⁾은 여러 주법

43) 앞서 연방법안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하게, ① 이용시간 제한 설정, ② 의무적 휴식 예약, ③ 연결된 계정 목록 포함 이용 정보의 확인, ④ 계정설정 변경시 알림 또는 청소년 본인의 설정변경 권한 제한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44) 청소년계정 관련 정보가 처리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거나, 청소년 및 보호자의 정보 삭제권 보장 등이 그와 같다.

중 전형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에 해당하였다. 동법의 핵심은 ‘청소년 이용 필요성이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 연령 확인 조치 및 강력한 부모 도구 강제’에 있다.⁴⁵⁾ 법 위반 시 금전적 제재(civil penalty)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위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접속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웹사이트, 서비스 또는 제품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청소년 대상성을 결정하는 데 주제, 언어, 설계 요소, 시각적 콘텐츠,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용 또는 아동 지향적 활동이나 동기,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 모델의 나이, 아동에게 유명하거나 호감을 주는 자의 존재, 광고, 청중(audience) 구성에 관한 경험적 증거, 기타 의도된 청중에 대한 증거 등 11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규제 대상에는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및 온라인게임/활동 회사 등 다른 이용자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며, 사회적 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목록을 만들며,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생성, 게시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검색엔진, 클라우드,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나,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리뷰하거나 리뷰에 댓글을 다는 경우 또는 확립되고 널리 알려진 언론 매체에 코멘트를 다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세부 내용으로, 청소년 이용 제한은 다음과 같다. 운영자는 이용자의 연령 확인,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검증 가능한 동의 수령 및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서면 동의 확인서 송부 등을 강제하고, 동의가 없으면 청소년의 해당 온라인 서비스 등에 대한 액세스 또는 이용을 거부해야 한다. 여기서 연령 확인은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의 양식 징구, 신용카드/직불카드/기타 온라인 결제 시스템 사용, 무료 전화번호 전화, 화상 시스템을 통한 직원과의 연결, 정부 발급 신분증 양식 확인 등을 말한다.

부모 도구 강제는 다음과 같다. 운영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특정

45) Ohio Rev. Code § 1349.09.

46) 플로리다주법이 대체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보인다.

프로필에 대해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콘텐츠를 검열(censoring)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기능 목록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하여야 한다.

아칸소주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하다. 2023년 9월 발효될 예정이었던 아칸소주의 소셜미디어 안전법(Social Media Safety Act)⁴⁷⁾도 핵심은 오히려오주와 유사하게 소셜미디어 회사로 하여금 주에 거주하는 모든 계정 소유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소셜미디어 회사는 계정 보유자로 하여금, 다른 프로필 및 계정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개 프로필을 만들고, 콘텐츠를 업로드 또는 게시하며, 다른 계정 보유자의 콘텐츠를 열람하고, “요청과 수락을 통해” 다른 계정 보유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라고 정의하였고, 예외가 되는 서비스 대상의 범위도 보다 넓게 잡았다.⁴⁸⁾ 또한 법으로 정해진 제3의 위탁업체를 통해 신분증 제출 등 연령 확인 및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 확인을 강제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3) 이용자체를 제외한 종합적 제한을 가하는 유형 - 캘리포니아주 (CAADCA)

2022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의 연령적합설계법(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 CAADCA)⁴⁹⁾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소비

⁴⁷⁾ Arkansas Act 689 of 2023.

⁴⁸⁾ 매출이나 수익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 그리고 대화형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보관이나 사이버보안 서비스, 경력개발/교육 도구, 이메일이나 직접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 뉴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정보 제공형(pre-select) 서비스, 상호작용이 제품 리뷰나 구매표시뿐인 온라인쇼핑 사이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⁴⁹⁾ Cal. Civ. Code § 1798.99.29. 오늘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광고를 통해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받으면서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보다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방 COPPA(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등의 데이터 수집 시 제한 및 관련 부모의 결정 권한 부여)와 기존 캘리포니아 소비자

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업 규모, 수익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접근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법이다. 동법은 설계 제한, 위험평가, 보고 등을 강제하는 등, ‘직접적인 연령제한’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한 청소년 보호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연방법안인 KOSPA와 다른 주법의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CAADCA는 영국의 연령적합설계법(Age-Appropriate Design Code)을 본떠서 제정되었다고도 알려져 있다.⁵⁰⁾

규제 대상 업체는 다음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i) 데이터보호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를 완료하고⁵¹⁾ 주정부 요청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i) 합리적 수준에서 확실성을 갖고 이용자 연령 추정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모든 소비자에게 청소년 수준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소년에게는 프라이버시 보호 값을 가장 높은 수준의 것으로 설정하고, 서비스 약관 등을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제공하며, 반드시 이를 시행, 준수하여야 한다. (iii)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신체, 정신건강 또는 안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청소년 프로파일링이나 위치정보 수집도 금지된다. 청소년이 적극적,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 공유 또는 보유해서는 아니 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래 수집 목적 외의 사유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에게 프라이버시 포기 등을 유

프라이버시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결정 권한 부여)의 보호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상회하는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CAADCA가 제정되었다.

⁵⁰⁾ Peter J. Benson, *NetChoice v. Bonta and First Amendment Limits on Protecting Children Online* (LSB1107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egal Sidebar, 2023, 4.

⁵¹⁾ 온라인 서비스, 제품 또는 기능의 목적, 청소년의 이용 방법 및 업체의 데이터관리 관행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열거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역시 평가 대상이 된다.

도, 조작하는 은폐된 패턴(dark pattern)을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iv) 절차적으로는 부모 등이 청소년의 활동을 모니터링, 위치추적 시 해당 청소년에게 알림을 주어야 하는 한편, (v) 청소년, 부모 등이 청소년의 데이터 등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기 쉽게 하고, 청소년 유해 우려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용이한 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⁵²⁾

한편, 위 CAADCA와 별개로,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 9월에 소셜미디어에서 청소년 자녀에게 중독성 있는 피드(feed)⁵³⁾를 제공하거나 특정 시간 알람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Protecting Our Kids from Social Media Addiction bill)을 통과시켰다.⁵⁴⁾ 해당 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콘텐츠 자동 추천과 같은 중독성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청소년에게는 정규학기 중 일과시간에 부모 동의나 부모 도구에 의한 통제 없이 ‘알림’과 같은 중독성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52) 참고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 금지(연령 확인 강제), 야간 이용 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였던 유타주는, 위 캘리포니아주 입법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연령 확인 조치, 최고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 중독성 도구 비활성화 및 부모 감독 도구 시행,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규율하는 방향으로 선화하였다. 2024년 6월 입법된 뉴욕주법(청소년 대상 중독성 피드(feed) 악용 방지법(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SAFE) For Kids Act)과 뉴욕청소년 데이터보호법(New York Child Data Protection Act))은 KOSPA 및 CAADCA와 유사하나 보다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53) 온라인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보는 콘텐츠의 목록을 말하는데, 예컨대 이용자가 팔로우(follow) 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게시물이나 자동 추천되는 콘텐츠, 광고 등을 말한다.

54) “California governor signs law to protect children from social media addiction”, AP News, 2024. 9. 21. 수정, 2024. 10. 1. 접속, <https://apnews.com/article/california-social-media-addiction-children-law-bc649326701f892a16be1159bc008d71>.

Ⅲ. 미국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에 관한 위헌성 심사와 관련 논의

1. 종래 연방대법원의 입장 이해

강력한 선례인 2000년 전후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살펴본다. 연방대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인터넷에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제 입법이 성인과 청소년의 인터넷 접근을 방해하는지 위헌 판단을 하였는데, 향후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에 관한 판단에서도 유사한 논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대법원은 *Reno v. ACLU* 사건,⁵⁵⁾ *Ashcroft v. ACLU* 사건⁵⁶⁾에서는 문제 된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입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United States v. American Library Assn., Inc.* 사건⁵⁷⁾에서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이 중 *Ashcroft v. ACLU* 사건이 관련 논의를 가장 정밀하게 다루었다. 핵심 쟁점은 관련 규제 입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 기반 제한이라면 엄격심사척도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규제 대상이 광범

⁵⁵⁾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21 U.S. 844 (1997). 1996년 제정된 연방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중 “외설적이거나 부도덕한(obscene or indecent)” 메시지의 의도적 전송과 “성적이거나 배설적인 활동 내지 조직”을 사회 통념상 “반사회적(offensive)”으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묘사, 표현하는 정보의 전송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성이 문제 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위 법률 조항이 의미가 불명확하고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충분한 규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보았다.

⁵⁶⁾ *Ashcroft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35 U.S. 564 (2002); *Ashcroft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42 U.S. 656 (2004) 등 참조.

⁵⁷⁾ *United States v. American Library Assn., Inc.*, 539 U.S. 194 (2003). 미 연방의회는 앞의 두 사건에서 실패를 고려하여 2000년 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을 도입하였는데, 동법은 공립학교와 공공도서관이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컴퓨터에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법정 의견(6인)은 CIPA가 이용자가 아닌 “공공도서관” 등에게 필터 설치를 요구할 뿐이고, 공공도서관 등이 성인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필터링된 자료의 차단을 해제하거나 인터넷 소프트웨어 필터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면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하지 않게 충분히 한정되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규제 수단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였다.⁵⁸⁾

Ashcroft v. ACLU 사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상 음란물 노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COPA⁵⁹⁾)의 위헌성이 문제 되었는데, 동법은 온라인출판업자로 하여금 17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연령 확인 의무화를 통해 “청소년에게 해로운 자료”에 대한 액세스 제한(신용카드, 직불 계좌, 성인 액세스 코드, 개인 식별번호의 사용 요구, 디지털 인증서, 기타 합리적인 조치 등)을 강제하였다. 위 “자료”에는 사회 통념상 “호색적인 흥미(prurient interest)”를 자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성적 행위 또는 과도한 노출(여성의 가슴 등 포함)을 보여주는 경우는 포함되나,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는 경우 제외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문제의 COPA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엄격 심사 기준이 적용되었고, 특히 아동온라인보호위원회(The Commission on Child Online Protection)⁶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터링(filtering: 표시되는 특정 범주의 자료를 차단하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이 규제입법보다 우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연방대법원은 필터링의 경우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연령, 성숙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을 전제로, (i) 필터링은 정보발신에 관한 보편적인 제한이 아니라 수신 측에 선택적인 제한을 가하고, (ii) 자녀가 없는 성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정보접근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성인도 필터를 끄는 것만으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iii) 무엇보다 규제입법 해석 여하와 상관없이 필터 사용은 어떠한 종류의 표현

58) 박정훈, 미국의 온라인상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와 위헌성심사기준 - 청소년온라인보호법(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0권 제2호, 2011, 385-415면 등 참조.

59) Child Online Protection Act, 47 USC § 231.

60) 청소년 유해자료 접근 제한 수단의 상대적 장점을 평가하기 위해 의회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도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효과가 제거되거나 적어도 크게 줄어들고, (iv) 문제된 규제입법 이후 보다 덜 제한적인 법률이 통과되었다는 점을 높이 보았다.

위 사건은 수차례 하급심과 연방대법원을 오르내렸는데,⁶¹⁾ 최종 확정되기 전의 하급심⁶²⁾에서는 연방대법원 판사가 보다 구체화되어 판단되었다. 즉, 본인확인 조치가 쉽게 회피 가능하다는 점, 모든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점, 익명 접근 및 프라이버시를 저해하고 액세스 자체를 단념시킬 수 있다는 점, 적용 대상이 상업적 음란물 제작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일률 적용하는 점, 관할권 문제로 현실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논거로 판단되었다.⁶³⁾ 이후 인터넷 표현규제는 엄격한 심사 하에, 헌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부족하다거나 단순한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규제 대상이 구체적이고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고 성인 또는 청소년이 잠재적으로 차단된 자료에 접근할 방법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이 유해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제한이 덜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⁶⁴⁾

한편, 인터넷이 아닌 비디오게임 규제의 위헌성이 문제 된 사건이나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거부당한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사건 역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한다.⁶⁵⁾ 해당 사건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61) COPA는 이후 하급심의 본안판단이 부족함을 이유로 수차례 반복하여 연방대법원(2002년, 2004년)의 판단을 받았다. 2009년에야 연방대법원은 COPA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발효를 영구히 금지하는 하급심의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확정하였다.

62) *ACLU v. Gonzales* 478 F. Supp. 2d 775 (E.D. Pa. 2007).

63) 이는 “만약 청소년이 나이를 먹으면서 완전히 물려받게 될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으로 갇혀나갈 경우 이는 이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64) Mary B. Kribble, *Fear-Mongering, Filters, the Internet, and the First Amendment: Why Congress Should Not Pass Legislation Similar to the 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Roger Williams University Law Review* 13(2), 2008, 508.

(violent video games)”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보다 명확한 라벨링(labeling)하도록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위헌성이 문제되었다. 7인의 법정 의견은 (인터넷과 유사하게) 사상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상 세계에서 플레이어(player)가 상호작용하는 비디오게임 매체 고유의 특성상 수정헌법 제1조 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폭력 표현은 규제가 정당화되는 외설과 차이가 있고,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과 청소년 영향의 연관관계를 찾기 어려우며, 종래 업계 자율규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부모의 의사를 법으로 강제하는 포괄적인 정부 규제가 실제로는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 된 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2.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에 관한 위헌소송과 법원의 판단

가. (강제적 연령확인제 전제) 이용자체를 제한하는 유형

연령 확인제를 전제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에 관하여 하급심 법원은 거의 예외 없이 이를 위헌으로 보았다. 앞서 살펴본 오하이오주법이 문제 된 NetChoice LLC v. Yost 사건,⁶⁶⁾ 아칸소 주법이 문제 된 NetChoice LLC v. Griffin 사건⁶⁷⁾ 외에도, 미시시피주법이 문제 된 NetChoice LLC v. Fitch 사건,⁶⁸⁾ 유타주법이 문제 된 NetChoice LLC v. Reyes 사건⁶⁹⁾ 등이 있다.

⁶⁵⁾ Brown, et al.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n. et al., 564 U.S. 786 (2011). 이 이전의 또 다른 비슷한 논증이 사용된 이전 사건으로 United States v. Playboy Entertainment Group, 529 U.S. 803 (2000).

⁶⁶⁾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⁶⁷⁾ NetChoice, LLC v. Griffin, 5:23-cv-05105, (W.D. Ark.).

⁶⁸⁾ NetChoice, LLC v. Fitch, 1:24-cv-170-HSO-BWR (S.D. Miss.).

⁶⁹⁾ NetChoice, LLC v. Reyes, 2:23-cv-00911-RJS-CMR (D. Utah).

(1)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NetChoice LLC v. Yost 사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접속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및 적용 예외인 “널리 인정된” 미디어 매체 등이 모호하게 규정되었음을,⁷⁰⁾ NetChoice LLC v. Griffin 사건에서는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개념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은 물론, 강제적 연령 확인제에 필요한 입증 수단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함을 지적하였다.⁷¹⁾ NetChoice LLC v. Fitch 사건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같은 정의가 모호하다고 보았다.⁷²⁾

(2)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위반 여부 판단시 심사기준

사건에 따라 가정적으로 중간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 표현에 관한 내용 중립적이기보다는 내용 기반 규제로 보아 엄격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특히 NetChoice LLC v. Yost 사건에서 논거가 상세히 제시되었는데, 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접근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표현 내용을 고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외에도 인간 사고만큼이나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⁷³⁾ 소셜미디어의 “기능과 특징” 자체가 사업자의 편집 재량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표현의 일종이라는 점, 주정

⁷⁰⁾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26–27.

⁷¹⁾ NetChoice, LLC v. Griffin, 5:23-cv-05105, (W.D. Ark.), 30–35.

⁷²⁾ NetChoice, LLC v. Fitch, 1:24-cv-170-HSO-BWR (S.D. Miss.), 33–36.

⁷³⁾ NetChoice, LLC v. Fitch, 1:24-cv-170-HSO-BWR (S.D. Miss.), 23–24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든, 정치적 담론에 참여하든, 문화 간 대화를 추구하든, 교육을 보충하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전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청소년과 성인 모두)이 이러한 웹사이트를 매일 사용하여 보호되는 표현을 탐색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부가 청소년의 접근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특정 표현을 선호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점,⁷⁴⁾ 주정부가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는 사상을 제한할 수 있는 자의”를 갖지 않는 점 등이 그와 같다.⁷⁵⁾ NetChoice LLC v. Fitch 사건에서도 입법의 선한 동기 심지어 청소년보호와 같은 입법목적조차도 내용 기반 규제를 헌법적으로 허용할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⁷⁶⁾

NetChoice LLC v. Griffin 사건 역시 주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규제를 주점이나 카지노 출입 규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음에도, 소셜미디어는 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곳이므로 청소년이 주류를 소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고,⁷⁷⁾ 관련 규제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의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⁷⁸⁾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포함하여 방대한 표현을 제한하는 점, 많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규제가 내용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준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문제 된 법령들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청소년의 과다 사용이나, 플랫폼의 비양심적이거나 억압적 계약, 또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즉 “표현의 자유 제한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함을 입증하지

⁷⁴⁾ NetChoice, LLC v. Fitch, 1:24-cv-170-HSO-BWR (S.D. Miss.), 16-18도 유사한 지적을 한다.

⁷⁵⁾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21-23.

⁷⁶⁾ NetChoice, LLC v. Fitch, 1:24-cv-170-HSO-BWR (S.D. Miss.), 16-18.

⁷⁷⁾ 법원은 예컨대 쇼핑몰에는 바(bar)가 있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청소년은 바에서 주류를 주문할 수는 없지만, 서점이나 옷 가게, 운동용품 가게에는 갈 수 있으므로, 심사 대상이 법령은 쇼핑몰 안의 바가 아니라 쇼핑몰 입구를 막는 것이 아닌 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⁷⁸⁾ 그중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것으로, 폭력이나 자해행위의 묘사, 다이어트 정보, 집단 따돌림 발언, 신체적 특징, 인종이나 민족, 성적 지향 등. 해당 법원은 이러한 표현까지 제한된다면 엄격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못하였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⁷⁹⁾ 예컨대 NetChoice, LLC v. Griffin 사건에서는 입법자가 입법 근거로 주장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주정부가 인용하는 전문가 발언이나 문헌 어느 것도 매출이나 수익이 일정 액수 이상인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보호자 감독 없이 보내는 시간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 점에 주목하였다. NetChoice, LLC v. Reyes 사건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각종 정신 문제가 관련성은 있는 정도이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없으며, 법원에 유일하게 유력한 증거로 제출된 미국 연방보건국장(Surgeon General)의 권고(advisory)조차도 매우 미묘한 견해 예컨대 “소셜미디어상 청소년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은 아직 수행된 바 없고 소셜미디어가 유익하면서 유해할 수 있으며⁸⁰⁾ 역사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본 점”을 적시한다.⁸¹⁾ 현재 사업자 측이 지원하는 부모 도구나 정보가 불충분한 지도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⁸²⁾ 심지어 주정부가 소셜미디어(특히 중독성을 조장하는 특정 기능)가 니코틴과 같은 중독물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청소년의 경우 자동 재생을 금지하여 “재생” 버튼을 누르게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하는 식의 조치를 취하면 청소년의 건강 건강 지표가 개선되고 프라이버시 등의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는 증거조차 제시되지 않았으며,⁸³⁾ “이용자 생성 콘텐츠

79) NetChoice, LLC v. Yost, 2:24-cv-00047, (S.D. Ohio), 23-26; NetChoice, LLC v. Griffin, 5:23-cv-05105, (W.D. Ark.), 39-48.

80) 예컨대, 정체성, 역량, 관심사를 공유하는 다른 공동체와의 긍정적인 연결을 제공하고,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면서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정신건강 관리의 관문 역할 등도 수행함이 명시되었다.

81) NetChoice, LLC v. Reyes, 2:23-cv-00911-RJS-CMR (D. Utah), 25-27.

82) NetChoice, LLC v. Fitch, 1:24-cv-170-HSO-BWR (S.D. Miss.), 28.

83) NetChoice, LLC v. Reyes, 2:23-cv-00911-RJS-CMR (D. Utah), 29-30. 오히려 ESPN에서는 스포츠팀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지만 X에서는 그렇지 않고, Bing에서는 이미지 검색을 자동스크롤 할 수 있지만 Pinterest에서는 요리법은 그렇지 못하며, Disney+에서는 비디오를 자동 재생할 수 있지만 YouTube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 등을 통틀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이 정작 다

및 이용자 간 상호작용 기능”과 “중독성 있는 기능”을 함께 이용할 때 소셜미디어 특유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⁸⁴⁾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대개 다음과 같다. ① 소셜미디어가 현대의 공공 광장으로 뉴스, 취업 정보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인간의 사고와 지식의 광대한 영역을 탐색하는 주요 원천임에 비추어,⁸⁵⁾ 음란물과 같은 예외 외에는 단지 청소년이 접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표현과 사상으로부터 청소년을 배제할 수 없다.⁸⁶⁾ NetChoice, LLC v. Fitch 사건에서는 심지어 청소년의 온라인상의 안녕 예컨대 성인에 의한 착취로부터의 보호라는 이익조차도 그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⁸⁷⁾ ② 부모가 단 한 번의 계정 이용 동의를 할 뿐, 부모나 플랫폼이 다른 구체적인 위협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하지 않는 점도 문제 있다.⁸⁸⁾ 부모가 국가의 후견적 개입에 관하여 반대하는 경우는 물론 무관심한 경우에도 이 부분에 국가가 먼저 개입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입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⁸⁹⁾ “청소년의 소셜미디

른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중독적 기능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과연 완전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NetChoice, LLC v. Reyes, 2:23-cv-00911-RJS-CMR (D. Utah), 30-31.

84) NetChoice, LLC v. Reyes, 2:23-cv-00911-RJS-CMR (D. Utah), 31.

85) 예컨대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New Work Times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Facebook과는 그렇지 못하다.

86) 때로는 청소년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유튜브나, 성적 착취(몸캠피싱, sextortion)의 온상인 게임사이트나 비디오 채팅 애플리케이션도 제외되기도 하였다. 구글, 왓츠앱(WhatsApp), 스냅챗(Snapchat)과 같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바로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위험한 플랫폼으로 많이 보고된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아동 성 착취로 의심되는 보고가 단 한 건밖에 없었던 넥스트도어(Nextdoor)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87) NetChoice, LLC v. Fitch, 1:24-cv-170-HSO-BWR (S.D. Miss.), 24-25.

88) 주정부 비유를 반대로 보면 이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주점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리러 가지 않는 것과 같다.

89) NetChoice, LLC v. Reyes, 2:23-cv-00911-RJS-CMR (D. Utah), 27-28에서는 주정부가 부모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여러 수단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입증

어 계정 생성 시 부모의 동의를 요할 때 청소년이 보다 잘 보호받을 것이며 부모도 더 많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주정부의 막연한 가정일 뿐이다. ③ 광범위한 규제 대상의 설정과 연령 확인의 강제로 성인의 (익명성을 포함하여)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접근에도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보안이나 신원 도용 등 우려도 야기한다. ④ 수신 단계에서 선별적 제한(표적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신 단계에서 보편적 제한을 부과한다는 점은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⁹⁰⁾ 모든 청소년을 연령과 발달 정도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적용 대상으로부터 보호받는 표현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⁹¹⁾

나. 이용 자체의 제한을 제외한 종합적 제한을 가하는 유형

캘리포니아주법(CAADCA)이 문제 된 Netchoice LLC v. Bonta 사건이 대표적이다. 흥미롭게도 원심에서는 CAADCA가 위헌심사의 강도와 관계없이 모두 위헌이라고 보았으나,⁹²⁾ 항소심 제9순회 항소법원은 데이터보호 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위헌이지만, 나머지 조항의 경우 명시적으로 또는 대부분의 경우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⁹³⁾

했지만, 부모가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등 현재의 법규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⁹⁰⁾ NetChoice, LLC v. Griffin, 5:23-cv-05105, (W.D. Ark.), 47-48에서는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안이 미성년자가 특정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면, 위법은 콘텐츠와 관계없이 계정 생성 시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데, 오히려 영국식 접근법이 미 연방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동지 NetChoice, LLC v. Fitch, 1:24-cv-170-HSO-BWR (S.D. Miss.), 27-28.

⁹¹⁾ NetChoice, LLC v. Fitch, 1:24-cv-170-HSO-BWR (S.D. Miss.), 28-29.

⁹²⁾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⁹³⁾ NetChoice v. Bonta, No. 23-2969 (9th Cir. Aug. 16, 2024).

원심은 CAADCA 중 보고나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조항은 생산과 배포라는 표현행위를 요하고, 일정 정책을 요구하는 조항도 특정 표현 내용에의 접근을 검열, 금지하는 효과가 있어 결국 표현의 자유 제한이 되나, 일단 중간심사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헌성을 판단하였다.⁹⁴⁾ 이에 따라 청소년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중대한 정부 이익 즉 입법 목적은 충분히 입증되었지만,⁹⁵⁾ 그러한 수단으로서 개별 법조항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해악을 완화함에 적합한 수단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데이터보호영향평가(DPIA) 및 보고 강제 관련 조항의 경우 반드시 청소년 해악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ii) “이용자 연령 추정 및 추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최고 수준의 청소년 보호 적용(기본값 설정 포함)”은 청소년 피해 완화 가능성이 낮고, 업체의 정보수집이 늘어나 침해 최소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표현행위에 막대한 냉각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 성인 이용자조차 청소년 적합한 콘텐츠만 접하게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⁹⁶⁾ (iii) 연령적합적인 언어에 의한 서비스약관 등의 설명 강제⁹⁷⁾나 해당 약관의 시행 강제 역시 청소년 해악 완화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iv) 여러 규제가 의도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 이용”을 막는 것은 그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⁹⁸⁾ 청소년보호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인데, 예컨대 청소년 프로파일링 제한이 그에게 유익할 수도 있는 업체의 영업 행위도 금지하지만 이는 특히 공동체와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소년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

94)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11-13.

95)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18-19.

96)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19-25.

97) 즉 법률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다고 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소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98)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허용해두지만, 이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고 정치적 논란 소지도 있다.

할 수 있다.⁹⁹⁾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 처리나 은폐된 패턴(dark pattern) 제한도 충분히 수단적합적으로 좁혀지지 않았는데, 만약 광범위한 콘텐츠에 관하여 유아부터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까지 누구에게나 유해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면, 웹사이트는 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어떠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청소년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그의 콘텐츠 접근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¹⁰⁰⁾

반면 항소심에서 제9순회 항소법원은 원심의 데이터보호영향평가 관련 조항에 관한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파기환송 하였다. 데이터보호영향평가 관련 조항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설계 기능이나 유해한 콘텐츠로 인한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 문서화하고 위험 완화 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강제하여, 단순한 상업적 발언 규제를 넘어서는 일종의 강요된 표현(compelled speech)에 해당하여 엄격심사의 대상인데, 이는 결국 사업자로 하여금 “유해한 콘텐츠”를 스스로 정의하도록 하고 식별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검열을 사실상 사업자에게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 제공, 교육, 기존 형벌 조항의 활용 등 덜 제한적인 방법이 존재할 수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¹⁰¹⁾

그러나 다른 조항의 경우 반드시 그와 같지 않은데, (i) 은폐된 패턴(dark pattern) 즉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등의 경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선택권을 약화하는 인터페이스로 정의되므로, 이를 반드시 내용 기반 규제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고, (ii) 이용약관 등의 청소년 친화적 언어에 의한 제공 강제의 경우 강요된 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지

⁹⁹⁾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25-31.

¹⁰⁰⁾ NetChoice, LLC v. Bonta, 5:22-cv-08861, (N.D. Cal.), 32-34. 그 밖에 CAADCA의 나머지 부분도 위헌 가능성이 있는 타 조항들과 불가분하다고 보았다.

¹⁰¹⁾ NetChoice v. Bonta, No. 23-2969 (9th Cir. Aug. 16, 2024), 25-37.

만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iii) 나머지 조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여러 국면을 고려할 때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이 데이터보호영향평가와 반드시 불가분한 것은 아니고, 별도의 추가 검토를 요하므로 반드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¹⁰²⁾

3.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 비판

가.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지나친 기술만능주의적 접근

소셜미디어 규제가 소셜미디어 문제를 정의함에 있어 미디어 효과성(media effect orientation)을, 소셜미디어 시스템의 설계 규제에 있어서는 기술만능주의자성(technosolutionist orientation)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¹⁰³⁾ 해당 견해는 흔히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을 주장하기 위해 음주, 흡연, 운전이나, 차량 안전띠 같은 소비자 제품 안전의 역사를 제시하는 경우를 부정한다. 데이터 보호나 미디어의 자동 재생 금지, 위치 공유 제한과 같은 일부 기술적 사항을 제외하면, 청소년 우울증이나 따돌림 같은 현상은 수십 년간 전문가들이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매우 복잡한 사회심리적 문제로서 그 발생 원인이 소셜미디어 외부에 있고 측정이 난해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업이 예방, 완화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해결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 헌법적 보호 대상인 ‘모호한’ 표현에 대한 위헌적 검열 우려

중독성 있는 행동 장려 패턴이나 기능의 활용 또는 우울증, 섭식장애

¹⁰²⁾ NetChoice v. Bonta, No. 23-2969 (9th Cir. Aug. 16, 2024), 37-43.

¹⁰³⁾ Maria P. Angel and Danah Boyd, Techno-legal Solutionism: Regulating Children's Online Safety in the United States, *In Proceedings of 3rd ACM Computer Science and Law Symposium(CSLAW '24)*, ACM, 2024, 23-27, 87.

등 정신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는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여실히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¹⁰⁴⁾ 명백히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닌 성적 착취나 학대, 담배/주류/도박의 홍보 판매, 약탈적/불공정/기만적이거나 기타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는 마케팅, 신체적 폭력 자체 외에는, 대부분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고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할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규제 논리는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고,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임의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성이 크다고 본다.¹⁰⁵⁾ KOSA가 여러 비판에 대응하여 청소년이 “의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검색하는 경우(즉 청소년보호를 위해 그 자율성을 인정함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는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예외를 두었지만, 이는 소송 시작 전 플랫폼이 사전 검열할 가능성까지는 배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다. 청소년에게 실효성 없고 되레 유해하며, 성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응

입법의 선량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VPN을 이용해 연령 확인이나 부모 감독을 회피하거나 이러한 제한이 없는 소규모 소셜미디어로 이동할 수 있고, 미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실제로는 청소년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오히려 발달에 필요한 정보 접근(생활 필수적인 정보와 공동체 탐색)을 방해, 위축시키거나, 가정 내 학대의 익명 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¹⁰⁶⁾ 예컨

104) Ben Sperry, A Coasean Analysis of Online Age-Verification and Parental-Consent Regimes, *ICLE Issue Brief 2023-11-09*,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 Economics, 2023, 23-27.

105) Marwick, A., Smith, J., Caplan, R., & Wadhawan, M., Child Online Safety Legislation: A Primer, *Bulletin of Technology and Public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24, 10.21428/bfcb0bff.de78f444, 29-32.

106) Marwick, A., Smith, J., Caplan, R., & Wadhawan, M., Child Online Safety

대 성소수자의 경우 부모의 디지털 감시를 경험한 후 자기 검열을 하거나 부정적 정신건강 상태에 놓이고 학대를 당하는 예도 있고, 낙태가 해롭다고 정의되지 않더라도 연령 확인이 시행되면 관련 정보를 찾는 청소년에게는 불가피하게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¹⁰⁷⁾

나아가 관련 입법이 연령 확인을 요하는데 이는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를 희생하지 않고 구현하기 어려워 대법원 선례에 비추어 위헌적인 연령 확인 체계를 만들고 성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¹⁰⁸⁾ 성인이 익명으로 웹을 탐색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수 있고, 포르노 사이트나 인종, 성, 건강 문제, 낙태 정보, 성소수자 콘텐츠 등의 사이트가 정부 감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민간 기업이 매우 내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신원 도용이나 해킹, 유출, 침해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킨다.¹⁰⁹⁾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확인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분증, 카드가 없는(18%의 미국인) 성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예컨대 신분 확인 정보가 불법 이민자의 체포나 추방으로 이용될 수 있어 온라인 이용 자체를 억제할 수 있음), AI 기반

Legislation: A Primer, *Bulletin of Technology and Public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24, 10.21428/bfcb0bff.de78f444, 25–27, 30.

¹⁰⁷⁾ Park, Jinkyung et al., Towards Resilience and Autonomy-Based Approaches for Adolescents Online Safety (May 20, 2023),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4608406> or <http://dx.doi.org/10.2139/ssrn.4608406>, 2. 논쟁의 복잡성과 모순성이 미국에서 청소년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균형 있게 형량하는 법적 기준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특정 콘텐츠 접근 제한을 우려하며 청소년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있어야만 하고 동시에 청소년 스스로가 온라인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¹⁰⁸⁾ Edward Longe, Keeping Teens Safe On Social Media: A Guide for Free-Market Lawmakers, *Issue Commentary* July 2023, The James Madison Institute, 2023, 3–4. 동지 Marwick, A., Smith, J., Caplan, R., & Wadhawan, M., Child Online Safety Legislation: A Primer, *Bulletin of Technology and Public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24, 10.21428/bfcb0bff.de78f444.

¹⁰⁹⁾ Marwick, A., Smith, J., Caplan, R., & Wadhawan, M., Child Online Safety Legislation: A Primer, *Bulletin of Technology and Public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24, 10.21428/bfcb0bff.de78f444, 27–28.

얼굴 인식은 쉽게 우회될 수 있고 인종 편향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¹¹⁰⁾

IV. 우리 헌법 해석상의 시사점

1.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비교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미국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본인확인 조항의 위헌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성인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을 전제로, 개인의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자발적 설치는 청소년 차단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인터넷상에서는 본인인증 절차 없이 실명이나 연령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할 경우 다소의 수고는 감수하여야 하더라도 정확한 효과가 있고 과도한 요구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다른 정보 수집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법(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제공으로 인한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본인확인만으로 어떠한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¹¹¹⁾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한 청소년의 기본권제한 쟁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청소년 심야시간 인터넷게임의 제공 금지나,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강제의 위헌성이 문제 된 사건에

¹¹⁰⁾ Marwick, A., Smith, J., Caplan, R., & Wadhawan, M., Child Online Safety Legislation: A Primer, *Bulletin of Technology and Public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24, 10.21428/bfcb0bff.de78f444, 25-27.

¹¹¹⁾ 헌재 2015. 3. 26. 2013헌마354, 판례집 27-1상, 312, 317-322.

서도, 헌법재판소는 국내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과몰입 및 중독 시의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요청을 전제로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대체 수단이 되기 부족한 한편, 인터넷게임은 주로 동시접속자와의 상호 교류를 통한 게임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독성이 강한 편이므로 이와 같은 규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거나,¹¹²⁾ 달성하고자 하는 게임 과몰입 및 중독방지의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본인인증 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러한 수단이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여부 및 이용 시간을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다른 법적 강제 수단들이 이러한 자율적 노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없으며 대부분 독립적인 경제 능력이 없는 청소년의 유료 아이템 구매 등 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에 비추어 만 18세라는 기준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방안이 기본권 제한 최소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격체로서의 성장이라는 사회적 이익이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다.¹¹³⁾

한미 간에 헌법해석론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표현의 자유 및 기타 기본권과 청소년보호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기본권제한을 심사하는 판단기준을 형식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다르게 취했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청소년보호라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조차도,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의 내용에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강도가 높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취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심사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규제 수단 사이의 기본권제한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심사 대상인 규제 자체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실제 증거에 기반하여 매우 과학적인 접근을 취한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되는 부모 등 법적 보호자는 물론 청소년도 순전

112) 현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 판례집 26-1하, 176 이하.

113) 현재 2015. 3. 26. 2013헌마354, 판례집 27-1상, 312, 318 이하.

히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기본권 주체의 지위를 중요하게 살피는 결과로 나타난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금지심사는 하지만 이를 엄격하게(또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필터링 수단이 갖는 압도적인 장점을 사실상 전혀 평가하지 않음과 동시에 왜 이것이 청소년보호에 불충분한지 전혀 논증하지 않고,¹¹⁴⁾ 동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영국 등 현대 법치국가에서도 보기 어려운 연령 확인의 강제로 인한 여러 기본권 주체의 다양하고 무거운 기본권제한의 양상을 무시한다(표현시장 전반의 위축 효과 경시도 이와 같다). 또한 청소년에 대하여 기본권 주체의 입장에서 각 규제로 인한 기본권제한 정도를 거의 판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소년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전혀 믿을 수 없고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믿고 있는’ 매체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부모 등 법적 보호자의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사적 영역에 국가가 기본권 침해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왜 상호 교류 방식의 게임이 보다 중독적인지, 유료 구매 노출 우려가 왜 게임 자체에의 접근을 막을 이유가 되는지 등에 관하여 기초적 논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이다.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의 경우에는 물론 우리의 경우 비교법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가 매우 넓고 불명확한 편에 속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음란물 등만을 규율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나, (역시 위헌성 논란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지만) 인터넷게임 규제보다 훨씬 기본권제한의 범위가 넓고 파급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된다. 미국 하급심 법원은 대체로 미 연방대법원의 선례에 충실하여 명확하지

114) 이와 같은 판시사항은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조항의 위헌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반대의견(재판관 조용호)에 의해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와 같이 이를 대체할 만한 덜 침해적인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복잡하고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상당한 본인인증 절차를 이용자 모두에게 강요한다는 지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15. 3. 26. 2013헌마354, 판례집 27-1상, 312, 322-325.

않은 표현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도대체 규제 대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주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규제 예외로서 “널리 인정된 언론매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미국 법원은 대개 엄격한 심사를 채택하고 (보다 낮은 심사 기준을 채택한 경우는 대개 낮은 심사 기준조차 통과하지 못함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청소년의 개념을 18세 미만의 추상적 집단이 아닌 연령과 발달, 사회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개개의 기본권 주체로 봄을 전제로, (일견 열등하거나 저속하다고도 경시될 수 있는 새로운 매체인) 소셜미디어 유해성 및 청소년문제와의 인과관계, 청소년 유해성의 제거에 있어 규제의 유효성 등을 엄격하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소셜미디어 자체나, 자동 재생 같은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정말로 청소년 건강지표가 개선되는가?), 소셜미디어의 유해성 외 다양한 속성(유익한 부분에 대한 접근조차 저해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법제의 공허성(부모가 단 한 번 동의하면 청소년 유해성이 일체 해소되는가?)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침탈(왜 규제를 원치 않는 부모의 의사도 강제하는가?), 다른 성인 이용자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과연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존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때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미치는 기본권제한의 양상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청소년보호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2. 한국에서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 문제

가. 헌법적 고려 사항

(1) 법적으로 규제될 만한 청소년 유해성이 있는가?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에 주목

하는 여론에 힘입어, 입법자들이 연구 결과를 ‘편향적으로’ 수용하고 ‘과학적으로’ 소셜미디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¹⁵⁾ 그러나 청소년 유해성과 규제 필요성은 쉽게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입법자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신뢰성이 높은 미국 정부와 미국심리학회도 입장도 실재는 꽤 다르다.¹¹⁶⁾ 해당 자료에 따르면 “문제 있는 이용” 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잠재적인 해악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주류, 담배처럼 의학적 작용이 분명하여 법적 금지가 강제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없다. 심리학계도 소셜미디어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모두를 인정하고, 혼란 “강한 인과 주장”을 거부한다. 페이스북 내부 문건의 문제점 중 하나로 청소년의 자기보고(self-response)가 전적으로 의존한 분석이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다른 방법론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여럿 존재한다고 한다.¹¹⁷⁾

국내의 연구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데,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에 따라 정신건강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그와 같지만은 않다는 점, 소셜미디어 부작용은 대개 현실 문제(학교 폭력, 우울증, 중독)의 연장이라는 점, 청소년 간 연령 차이는 물론 구체적인 이용 양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¹⁸⁾ 청소년문제가 소셜미디어 인터페이스에 의한 것인지, 콘텐츠에 의한 것인지, 성

115) 페이스북 청문회 이후 KOSA를 발안한 상원의원인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과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설계와 사회적 해악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신”하였고, 연방 보건국장(Surgeon General)이 “현재로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충분히 안전한 지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는 자문 의견을 발표하면서 명확한 입증을 건너뛰고 논의가 전개되었다.

116)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202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ealth Advisory on Social Media Use in Adolescence, 2023.

117) 대표적으로 Madeleine J. George et al., Young Adolescents’ Digital Technology Use, Perceived Impairments, and Well-Being in a Representative Sample, *J. Pediatr.* 219, 2020, 181.

118) 진호성,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최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원, 2024, 17-21면에 각종 과학적 연구 내용을 정리해둔 것을 다시 요약한 것이다.

인과 구별되는 청소년의 특징 때문인 것인지 확실하게 구별하고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반하여 소셜미디어가, 또한 소셜미디어의 특정 기능이 어떠한 청소년에게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¹¹⁹⁾ 이 점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반드시 유해하여 이를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음은 사실이다.

(2) 명확하면서 사전검열이 아닌 규제가 가능한가?

미국 사례에서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다. 청소년에게 대체로 이롭거나 접근이 허용될 필요가 있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예컨대 상품리뷰, 교육적 콘텐츠 또는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지만, 입법자의 자의적 구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리의 경우 막연히 청소년 유해성을 정의하고 법적으로 강제해 온 경향이 있으나, 어떠한 표현이 일탈적, 병적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관해 논쟁의 여지가 있음은 여전하다. 규제 방식도 업체의 일반적, 포괄적 의무를 규율하는 부분의 불명확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사전검열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우리의 경우 규제 입법의 유형에 따라 이러한 헌법적 쟁점도 문제될 수 있다.¹²⁰⁾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디오물 등급제 사건에서 일단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그 공개나 유통 자체를 금

119) 관련하여 기술 자체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적어도 청소년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의지하는 ‘공간(place)’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오히려 소셜미디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것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시적으로(visible)’ 보이게 한다는 결론을 내는 입장으로, Danah Boyd, *It's Complicated: The Social Lives of Networked Teens*, Yale University Press, 2014, 24, 47, 92-93, 110, 113, 122, 136, 212.

120)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의사 표현의 내용을 규제할 것,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제한할 것, 법적 규율을 통해 표현물의 공개나 유통을 금지시킬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3, 383-384면.

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경과하여 이용 가능한 연령이 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¹²¹⁾ 결론의 당부와는 해당 판례가 소셜미디어 규제에서도 설득력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 미국 사례에서 대개 소셜미디어 규제를 표현 내용의 규제로 본 것과 같이, 청소년 유해성 평가를 전제로 표현수령자의 접근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 유해성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기준을 사용한다는 점 외에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해성의 경계에 있는 콘텐츠는 물론, 소셜미디어상에서 이루어지는 유익할 수 있는/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막대한 인간적 사고와 발상, 정보에 대한 접근이 모두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검열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본권제한이 해제된다는 논리 역시 연소자에 대한 무시를 전제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적 논리로 읽히기도 한다.

(3) 기본권 주체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지나친 규제가 될 여지가 있는가?

(가) 청소년

우리 헌법은 제34조 제3항, 제36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과 보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나, 이것이 청소년의 기본권 주체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소셜미디어는 의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언론매체 액세스권 모두와 관련되는데, 청소년을 포함하여 누구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저질의 정보부터 전문적 논의까지 인간 사고로 표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해당한다. 우리의 경우 소셜미디어 규제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내지 직간

¹²¹⁾ 헌재 2007. 10. 4. 2004헌바36, 판례집 19-2, 362, 372.

접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여러 기본권도 제한할 우려도 있다. 소셜미디어 이용이 사실상 온라인상의 모든 사회적 행위(교육, 일반놀이, 경제생활, 사생활 등)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한편, 추상적, 평균적 집단으로서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예컨대 성소수자,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소수자도 보다 유심히 살펴야 한다. 셋다운제 사건을 돌이켜보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새벽 시간에는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학생은 일과시간에는 학교 공부에, 야간 시간에는 수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형적이면서 후견적인 사고에 입각한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어떠한 소수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야간시간이 아니면 인터넷게임(특히나 유해한 인터넷게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을 즐기거나 타인과 소통할 기회를 가질 기회가 없었을 수 있다. 만약 규제가 도입된다면 셋다운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본권 제한이 보다 크고, 소수자에게 보다 가혹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나) 부모 등 보호자

이용규제는 헌법 제36조 제1항 등에 근거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제한한다. 미국 사례에서 거듭 확인되는 부분으로, 국가의 청소년보호는 부모의 의사를 쉽게 예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즉,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하여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지(기기를 사주지 않을지,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쓸지, 국가가 마련해준 수단을 ‘선택’하여 이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아닌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

한편, 과연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하여 부모의 의사를 추단하여 입법화하는 것이 침해최소적 수단이나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점은 NetChoice, LLC v. Griffin 사건에서 만에 하나 소셜미디어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주점에 비유하더라도, 부모가 최초로 단 한 번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키는 것을 허용하면 이후 모든 청소년 유해성이 사라지고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회복되는지 엄밀히 논증한 부분에서 명쾌하게 드

러난다. 정작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애착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출되는 여러 청소년문제가 국가개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데, 관련 규제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적고, 반대로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자녀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

부모 도구의 경우 부모와 청소년의 기본권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입법례를 보면 부모가 청소년 계정을 폐지하거나 대화 내역이나 정보를 전면 통제하는 것부터, 관리 감독 도구를 사용하거나 이용 시간을 제어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알림을 주도록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었는데, 청소년의 연령과 발달에 따라 개입의 정도가 조절되어야 한다.

(다) 소셜미디어 업체 및 다른 성인 이용자

우리의 경우도 소셜미디어 회사는 영리 기능, 언론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모두가 문제 되지만, 소셜미디어별 기능과 특징으로써 표현이 뚜렷하게 구별되고 의사소통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됨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¹²²⁾ NetChoice v. Yost 사건에서의 우려와 같이 소셜미디어의 규제는 구체적인 방향성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성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 즉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¹²²⁾ 소셜미디어는 플랫폼으로서 정보의 매개에 주력하므로 편집, 발행인이 스스로 정보 확산의 주체가 되는 신문의 경우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나, 결국 편집과 유사하게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예컨대, 콘텐츠의 나열 방식, 구분 등)으로, 자율적으로 전반적인 표현의 방향성을 정하게 되므로 이에 빚대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신문 사업자의 본유적이고 고유한 편집권에 관해 판시한 경우로,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판례집 18-1하, 337, 410-411 참조.

특히 마약, 주류, 담배와 같이 의학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와 달리, 정치적 편향 여지가 없는 청소년 유해성을 설정하고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나아가 연령 확인 조치가 수반되거나 연령 확인 없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내용만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경우, 다른 성인 이용자의 기본권도 제한된다. 이는 통상 미국식으로는 ‘익명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비교법적으로는 물론, 근래 주요 공공기관, 사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익명의 자유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익명의 자유는 잘 갖춰진 행정 시스템을 누리는 표준적인 국민만이 아니라, 이를 보장하지 않을 때보다 불이익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다양한 사람도 고려하여야 한다.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신용카드 미보유자와 같이 개인 사유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람, 본인 확인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고령자 또는 본인확인 시 퇴거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불법체류자가 그와 같다.

나. 국회 입법안 평가

우리 국회의 입법안을 간략하게 살펴본다.¹²³⁾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윤건영 의원안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¹²⁴⁾로 하여금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회원가입을 거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연령 확인 조치를 강제한다. 반면 김장겸 의원안의 경우에는 “청소년”(연령 규정 없음)을 대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중독성 콘텐츠”의 제공을 금지하고

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등 25인, 2201798, 2024-07-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등 10인, 2201816, 2024-0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등 11인, 2202761, 2024-08-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등 11인, 2202777, 2024-08-13) 등.

12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역시 연령 확인 조치를 강제한다. 여기서 “중독성 콘텐츠”란 시간순이 아니게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특정 시간에 알람을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조정훈 의원안 역시 사업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일별 이용 한도 설정, 정보 추천 알고리즘 허용 등에 관해 친권자 등의 확인을 얻도록 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연령확인 조치를 규정한다.

일련의 입법안은 소셜미디어 또는 그 특정 기능이 청소년에게 유해함을 전제한다. 그러나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그 유용성과 선한 영향력(예컨대 교육, 정보 습득)을 감안하고서도 이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유해한지, 이용을 제한할 때 유해성이 해소되는지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중독성 콘텐츠 등 개념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중독성 콘텐츠는 사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출하고자 하는 표현 내용 자체일 수 있어(예컨대 국가에 계엄 사태가 발생하여 이러한 관심사 위주의 정보전달도 중독성 콘텐츠인가?) 사업자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사전검열이 아닌지 문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 위반은 아니더라도 청소년보호에 적합한 수단인지, 침해최소적인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 있다.

윤건영 의원안의 경우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체의 콘텐츠에 대해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상당하다. 소셜미디어 이용 허락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과 같은 문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김장겸 의원안이나 조정훈 의원안의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츠 노출, 특정 시간 알람, 일별 이용 한도 제한 등 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반드시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기망적, 착취적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고(이 부분은 당연히 성인조차도 보호받아야 한다) 각각 기능의 청소년 유해성이 확실하지 않은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가 부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제한 수단으로서 적합한지, 침해최소적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김장겸 의원안의 경우 청소년의 연령과 발달에 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에 관한 미국의 입법 동향 및 관련 헌법적 분쟁을 살펴보고 우리 헌법 해석상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규제 입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판단도 활성화되어 있어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가치가 상당하다. 핵심은 강제적 본인확인제를 전제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만일 연령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성인에게도 청소년과 동등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개인정보 보호, 중독성 기술 제한, 제공콘텐츠 제한 등)를 강제하는 것인데, 후자는 규제 강도에 따라 사실상 청소년의 이용 가능한 미디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인터넷 규제에 관한 종전 논쟁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기도 하는데, 하급심에서는 대체로 종래 미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수용하여 관련 규제 내용이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을 이유로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 입법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본권을 폭넓게 제한하는데, 대표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할 수 없는 학대받는 아동이나 성소수자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해 미처 예상치 못한 기본권 제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규제는 국가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대신하여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자유의 매개체로서 소셜미디어 업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기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령 확인이 강제될 경우에는 연령 확인을 원치 않거나 쉽게 할 수 없는 성인 이용자의 익명의 자유까지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청소년과 소셜미디어를 특정하는 규제 입법은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고, 청소년 유해성의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관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지나친

규제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무분별하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규제 입법을 계수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를 논의한다면 헌법적 한계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김지혜 (2014). 미성숙 전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 헌법재판소 선거연령 사건과 셋다운제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3권 제1호, 111-130.
- 김하열 (2023). <헌법강의>. 서울: 박영사.
- 김현귀 (2020).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시론적 연구, <법과 정책>, 제26권 제1호, 27-59.
- 박정훈 (2011). 미국의 온라인상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와 위헌성심사 기준 - 청소년온라인보호법(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0권 제2호, 385-415.
- 박종현 (2011).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111-145.
- 배상률, 이창호, 김남두 (202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 대응방안 연구 II: 10대 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동훈 (201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에서 액세스권의 헌법적 의의. <유럽헌법연구>, 제13호, 263-292.
- 진호성 (2024).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연구 -미국에서의 최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원.
- 황성기 (2014.).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 현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병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1권 제3호, 27-49.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3). *Health Advisory on Social Media Use in Adolescence*.
- Ben Sperry (2023). A Coasean Analysis of Online Age-Verification and Parental-Consent Regimes. *ICLE Issue Brief* 2023-11-09,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 Economics, 1-29.
- Danah Boyd (2014). *It's Complicated: The Social Lives of Networked Teens*. Yale University Press.
- Edward Longe (2023). Keeping Teens Safe On Social Media: A Guide for Free-Market Lawmakers. *Issue Commentary* July 2023, The James

- Madison Institute, 1–8.
- Joe Cosgrove Jr. (2022). Section 230: Twenty-Six Words that Created Controversy. *Infrastructure*, 61(2), 1–16.
- Kathleen Ann Ruane (2018). How Broad A Shield? A Brief Overview of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LSB1008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egal Sidebar*, 59–68.
- Maria P. Angel and Danah Boyd (2024). Techno-legal Solutionism: Regulating Children’s Online Safety in the United States. *In Proceedings of 3rd ACM Computer Science and Law Symposium (CSLAW ‘24)*, ACM.
- Mary B. Kribble (2008). Fear-Mongering, Filters, the Internet, and the First Amendment: Why Congress Should Not Pass Legislation Similar to the 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Roger Williams University Law Review*, 13(2), 496–529.
- Marwick, A., Smith, J., Caplan, R., & Wadhawan. M. (2024). Child Online Safety Legislation: A Primer. *Bulletin of Technology and Public Lif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0.21428/bfcb0bff.de78f444.
- Nicholas Bradley (2022). Something for Nothing: Untangling a Knot of Section 230 Solutions. *Cardozo Law Review de-novo* 87, 57–89.
- Park, Jinkyung et al (2023). *Towards Resilience and Autonomy-Based Approaches for Adolescents Online Safety*.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4608406> or <http://dx.doi.org/10.2139/ssrn.4608406>.
- Peter J. Benson (2023). NetChoice v. Bonta and First Amendment Limits on Protecting Children Online (LSB1107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egal Sidebar*.
-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2023).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 ABSTRACT

U.S. Youth Social Media Usage Regulation and Constitutional Debates

Jin, Ho Sung

Senior Research Officer,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Lawyer

This study examines the restrictions on adolescent social media use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focusing on legislative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everal regulatory laws have been introduced at both federal and state levels in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adolescents, along with judicial decisions, making it a valuable reference point. The core idea is to make adolescents' social media use contingent upon parental consent, based on an ident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Furthermore, if age verification is not possible,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is enforced on adults as well, thereby limiting the range of services available. Lower courts have generally ruled these regulations unconstitutional, considering them unclear in their provisions and excessively restrictive of freedom of expression.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such measures reveals that restricting adolescents' use of social media infringes on several fundamental rights. For instance, it could result in unexpected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adolescents in vulnerable situations, such as abused children or sexual minoritie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may lead to excessive paternalistic intervention by the state, thereby replacing the parental right. Ultimately, it will negatively impact all users by

stifling social media companies as platforms for freedom of expression. Additionally,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it may restrict the anonymity of adult users who prefer not to or find it difficult to verify their age, potentially leading to personal data breaches. Moreover, regulations targeting adolescents and social media may, in itself, be unclear or overly broad. Furthermor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harm to adolescents may be ambiguous and politically biased, thus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it could amount to prior censorship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or at least be judged as excessive regulation. Therefore, caution is crucial regarding indiscriminate adoption of regulatory legislation concerning adolescents' use of social media, and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Keywords: Adolescents, Fundamental Rights of Adolescents, Social Media, Platforms, American Law

[논문투고일 2024. 10. 4. 논문수정일 2024. 11. 27. 게재확정일 2024. 12. 2.]